

# 자료열람 요구서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의거,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자료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■ 유의사항

-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금융소비자가 요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 자료의 열람이 가능합니다.
- 다만, 자료의 열람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## ■ 고객정보

고객명		생년월일	
계좌번호		연락처	

## ■ 열람목적

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감독원 분쟁조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소송
분쟁조정 및 소송 제기 내용 상세		

## ■ 열람범위

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설명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약관 <input type="checkbox"/> 녹취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:
요구사유	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

## ■ 열람방법

- 사본제공     직접청취     기타 :

본인은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 
상기와 같이 자료 열람을 요구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 \_\_\_\_\_ (인)